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65 발의연월일: 2021. 2. 5.

발 의 자:정청래·이규민·이용빈

이탄희 · 최혜영 · 이수진

오영환 · 김철민 · 권인숙

박찬대 의원(10인)

제안이유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학교 운영 실무를 담당하여야 하나 최근에는 사학법인의 이사장, 소속 학교의 장, 보직 교수 등 교 원 외에 직원이 사학 비리의 주체가 되거나 조력하는 경우도 많아 문 제가 되고 있음.

또한, 사학법인의 인사·채용비리는 사학법인의 비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대한 비리로서 설립자나 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임원 및 교직원들에 의한 학교 경영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징계요구권의 대상을 사무직원까지 확대하여 사립학교사무직원들의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

여 인사·채용비리를 방지함으로서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 이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 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4 신설).
- 나.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5 신설).
- 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 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6 신설).
- 라.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 도록 함(안 제72조의3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4부터 제7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0조의4(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 당 직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 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 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0조의5(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4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한다.
- 제70조의6(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 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
 -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 3.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 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제5장에 제7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3(임원 등과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을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70조의4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제7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70조의6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0.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0조의4(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① 제70조의2에 따라 임
	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
	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
	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u>을 하여야 한다.</u>
	②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권
	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
	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
	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
	도 불구하고 제70조에 따른 조
	사결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직
	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
	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
	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
	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신 설>

<신 설>

야 한다.

제70조의5(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사무 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4 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 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 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의6(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하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

 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

 당한 일을 하였을 때
-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의 행위에적극 가담한 경우
- 3.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경우
- 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 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 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 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에만 한다.
- 제72조의3(임원 등과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 설>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u>교원</u> 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신 설>

	공개하여야 한다.	
제]74조(과태료) ①	· <u>교원</u>
	또는 제70조의2에 따리	<u> 임명된</u>
	<u>사무직원</u>	
	1 0 /뉟케키 키.ዕ\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70조의4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제7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70조의6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1. ~ 9. (현행과 같음)

10.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
	<u>개한 경우</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